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64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 용혜인 • 이수진 • 신정훈

이재강 • 한창민 • 김영환

서왕진 • 복기왕 • 염태영

정진욱 · 김남근 · 송재봉

박지혜 · 김종민 · 소병훈

이광희 • 민병덕 의원

(179]

제안이유

최근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안전망으로 주목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도입 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본소득제도 모델이 제시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의 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 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음. 공론화는 국민의 질 높은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효능감과 시민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임.

이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국회의 교섭단체 정당·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누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2조).
- 마.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13조).
- 바.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청회 개최, 조사·연구 의뢰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위원장은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 아. 기본소득 공론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1조).
- 자. 위원장은 기본소득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 23조).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 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소득"이란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무조건적·개별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 2. "기본소득제도"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 과 법제를 아울러 이르는 것을 말한다.
- 3. "기본소득 공론화"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하여 숙의 토론,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숙고된 여론을 확인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4. "지역화폐"란 그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4조(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본소득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정보의 작성·공개·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기본소득 공론화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활동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6. 제17조에 따른 여론조사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7. 제21조에 따른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 8. 제23조에 따른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하는 20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 2.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12명
 - 3. 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5명
 -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한다.
 - ③ 제2항의 해임 또는 해촉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각 위원의 경험과 지식, 선호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론화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 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이하 "공론화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공론화지원단에 지원단장 1명을 두고,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지원단장은 공론화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론화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시민참여단) ①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고, 그 의견을 공론화의 최종 결과 도출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 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여론조사) ①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여론조사를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여론조사기관·단체"라 한다)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위원회는 제17 조에 따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론조사의 목적 · 내용 및 기간
-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 전화 가상번호의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 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 5. 그 밖에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여론수렴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 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한다.
-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5.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⑦ 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⑧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위원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 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⑨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위원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

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여론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의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등에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계획의 수립) ① 위원장은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은 위원

- 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화를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과정에서 위원 및 참여자 등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그 밖에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기본소득 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 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활동 및 공론화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2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재정지원)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홍보·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 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18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3. 제18조제6항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 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4. 제18조제6항제6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 5. 제1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자
- 6. 제1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 7.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

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2. 제1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